■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표 7] <개정 2015.7.31.>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9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1. 제56조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6조제6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58조제4항 또는 제90조제4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4. 제286조제1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87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 제289조에서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한 경우
7. 제289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이용한 경우
8.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제289조에서 준용하는 제63조를 위반한 경우
9. 제289조에서 준용하는 제413조(제286조제1항제4호의 업무에 한한다)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9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292조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2. 제292조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13. 제29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7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14. 제2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내용을 기록·유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414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16. 제4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7. 제426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18. 제426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불응한 경우
19. 제426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20. 제427조제1항에 따른 심문이나 압수·수색에 불응한 경우
21.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경우
2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